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축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queeze-out

권 상 로

조선대학교

Kwon Sang-Ro

Chosun Univ.

요약

우리나라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I. 서론

미국과 독일 등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2011년 개정상법은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를 신설하여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의 9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로 인한 소수주주의 억압과 강제 축출은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¹⁾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수주주축출제도의 의의와 기능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축출이란 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유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²⁾

소수주주 강제축출제도의 긍정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식의 보유가 특정주주에게 편중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³⁾ 또한

- 1) 정봉진, "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510면.
- 2) 강대섭, "기업결합 형성단계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 「법학연구」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47면.

소수주주에게는 막혀있는 출자회수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⁴⁾

III. 우리나라의 소수주주축출제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매도청구의 기준을 상법개정시 약식합병의 허용기준인 90%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매도청구권의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95% 이상의 주식보유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축출의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매도청구의 목적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⁵⁾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IV. 독일의 소수주주축출제도

독일 증권거래법의 제정과 함께 독일 주식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개정 법률에는 '소수주주의 축출'이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 규정으로 인해서 자본금의 100분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는 소수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228-229면.
- 4) 정봉진, "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476면.
- 5) 강대섭, "기업결합 형성단계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 「법학연구」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63면 이하.

리고 중대한 사유가 없더라도 현금보상만 해 주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squeeze-out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squeeze-out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은 큰 환영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소수주주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Moto Meter III' 결정에서와 같은 헌법상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다. 즉 이 새 규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찰이 부족했으며 이 법개정은 달성해야 할 목적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⁶⁾

V. 결어

독일은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 적용되는 대상회사를 상장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 비상장회사에 있어서도 강제퇴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회사는 사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한 인적색채가 강한 중소기업의 회사로써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시장 지향적인 강제적 사원(주주) 축출수단인 squeeze out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⁷⁾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 적용되는 대상회사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연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비상장회사에 게도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⁸⁾

■ 참고 문헌 ■

- [1] 정봉진, “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강원법학」, 제3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510, 2012.
- [2] 강대섭, “기업결합 형성단계에 있어서 주주의 보호”, 「법학연구」, 제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147, 2011.
- [3] Lutz Angerer, “Der Squeeze-out,” BKR, 2002, S. 260ff.
- [4] 정대익, “21세기 진입을 전후한 독일 주식회사법의 주요 개정내용(2): 2000년 이후”, 「법학논고」, 제2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238, 2006.
- [5]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p.26, 2005.

6) Lutz Angerer, Der Squeeze-out, BKR 2002, 260ff.

7) 정대익, “21세기 진입을 전후한 독일 주식회사법의 주요 개정내용(2): 2000년 이후”, 「법학논고」 제2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38면에서 재인용.

8)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5, 26면.